

한영통번역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

2018. 05. 01. 제정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학칙 제52조의1에 의거하여 한영통번역학과의 종합 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응시자격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3학기까지의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②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통산 4회 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.

제3조(응시 및 시행시기) ① 종합시험은 매 학기말 이전에 실시한다.
②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당해 학기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응시횟수) ① 종합시험은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 7회(과정 수료 전 최초응시 1회 포함)까지 응시할 수 있다.
② 응시기간이 경과하거나 응시회수가 초과되면 학위청구 자격이 상실된다.

제5조(시험과목)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과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종합번역 A->B, 종합번역 B->A(각100점 만점)
- ② 순차통역 A->B, 순차통역 B->A(각100점 만점)
- ③ 동시통역 A->B, 동시통역 B->A(각100점 만점)

제6조(합격점수) 합격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7조(출제, 채점위원 및 평가) 출제 및 채점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고사료) ① 학위청구 종합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원서와 함께 고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고사료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합격취소) 종합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에 미달되거나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합격이 자동취소된다.

제10조(합격인정 및 결과보고)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종합시험 결과를 심의한다.

② 학과장은 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합격자 명단을 최종 승인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